

단기 4293년 12월 14일

고 시 제 569 호

석유류 제품판매 가격 개정예 관한건

상 공 국



미 완 결	기 입 제	전 면 부	찬 편	완 결
			호	종

삭행상주의

수접
단기 3년 1월 2일
안입
단기 3년 1월 9일
재 결

시

합교
일 발송문서
부서

총발
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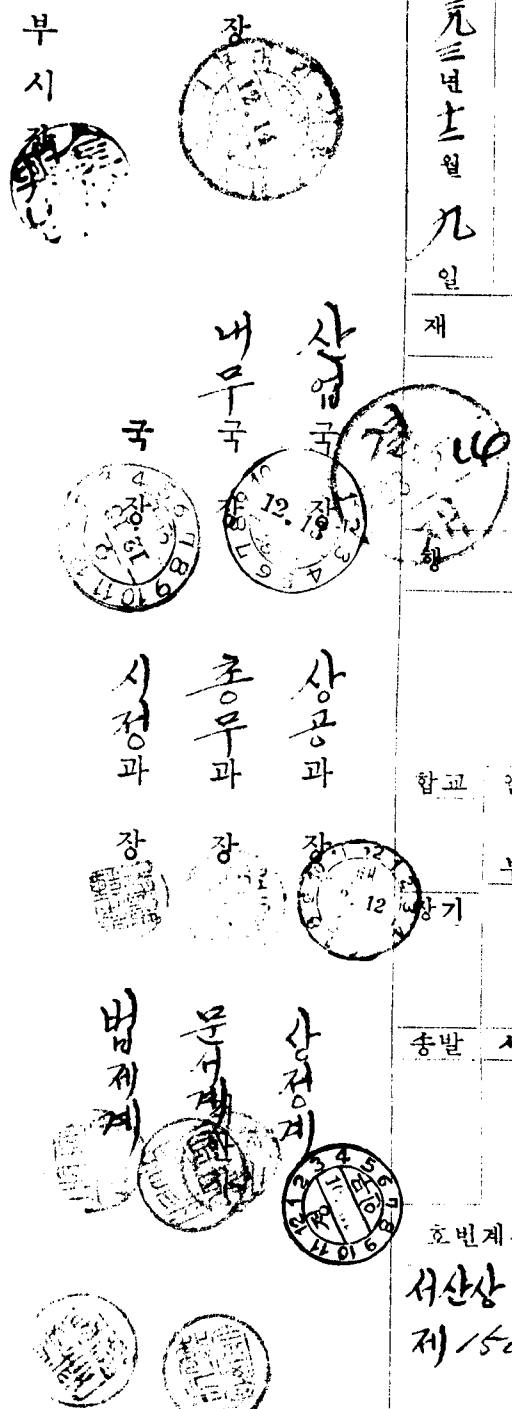
호번제관

서산상
제 1569호

전명 석유류 제품 판매가격 개정에 관한 건

(특종의 건)

본건에 관하여 상공부장관 등 협의에 의하여 1월 1일부터 석유류(경유 및 기제유 일부) 가격이 개정



(고시안)

서울특별시공시

제59호

단기 49년 10월 5일자 상공부장관 통첩 제89호
호에의하여 당시석유류 제품판매가격을 다음
과같이 개정하고 단기 49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

단기 49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장 직무대리

부시장 김주홍

기

경유 도량당 왕십리창고가격

85.0화

(시행제 1안)

상공부장관 날

시장직무대리 부시장

동 전

본건의 관하여 당시의 석유류 판매가격을 개편

실시하고 별지와 같이 고시하였자 용기 보고하나 이

다 (고시문 첨부할 것)

(시행제 2안)

주요사업일사외추진석유대리직대리
성공적유상조항연합회 이사장

시장직무대리 부시장

날

동건

본건의 관하여 당시의 석유류 판매가격을 별지와
같이 단기 1973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실시 하오나
판매액 유류액기를 기하시압

(고시문 참조할 것)

(시행 제 3안)

시정직무대리부서장

각도지사 알

동 건

본건의 관하여 별지 타 같이 개정 실시 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시문 참조할 것)

시행제안

시장적 무대리 부시장

각국장
각구청장
알

동 건

본건의 관하여 별지 타 같이 개정 시행 하오니 양

지하시암

추신각구렁에 있어서는 별지고시문을 반드시

계시하시기 참신함

(고시문 참송할 것)

(시행제 5안)

산업구장

내무국장 알

본건별지와 같이 고시 되었으니 시보에 게재 하여 주
시기 바라나이라 (고시문 참송할 것)